

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 제출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서류 심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
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서류 접수 기간	2024.09.23(월) ~ 2024.09.28(토) 10:00~17:00
대상자	당첨자(전체) / 대상자 당사 별도 안내
제출 장소	연신내양우내안에퍼스티지 견본주택 (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4-1)

- * 당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- * 모든 증명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4.08.30)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
- *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52조 제 4항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필요서류 확인_ 입주자모집공고일(2024.08.30) 이후 발행분에 한함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 서류	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	본인	• 견본주택비치
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*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사본 1통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.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(본인서명사실확인으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차 대리 신청은 불가)
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전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추가 서류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(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)
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증명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7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,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사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비함)
	복무확인서	본인	• 장기복무근원이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국공부기간명시
	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	배우자	•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,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(청약홈) 청약홈 > 청약자격확인 > 청약통장 > 순위확인서 발급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• (청약통장 가입은행) 청구 방문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
	당첨사실 확인서	배우자	•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,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(청약홈) 청약홈 > 청약소득방 > APT당첨사실 조회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•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•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기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'상세'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 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•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)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•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피부양 직계비속	•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-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•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- 30세 미만 미혼 자녀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30세 이상 미혼 자녀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부적격 당첨통보를 받은 자	해당 주택 소명서류	해당 주택	•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*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'소형·저가주택등'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	인감증명서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추가 1통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차 대리 신청은 불가)
	위임장	본인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(견본주택에 비치)
	신분증, 인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
- * 본 안내문에 반영된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, 정부정책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
- *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함.
- *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적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,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, 당첨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.
- * 상기 서류는 세대원 포함 "주민등록번호" 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, "상세" 발급을 원칙으로 함. 또한, 주민등록표등(초)본에 " 주소변동사항 및 사유", "세대주와의 관계" 등이 포함되어야 함.